

경술국치일

庚戌國恥日

일명, 한일병합조약일. 1910년 8월 29일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국과 일본 간의 조약이 불법 체결된 날이다.

1910년 8월 22일 순종에게 전권위원 위임장을 받은 이완용이 데라우치와 맺은 '한일병합 조약'은 이전 조약들과 달리 전권위임장, 순종의 서명, 대한제국 황실의 공식 국새인 대한국새 날인 등 형식상 정식조약의 요건을 갖추었다. 심지어 이 조약문에는 한국 황제와 일왕(편집자 주)의 재가를 거쳤으므로 공포일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국제조약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전승인이라는 편법마저 동원되었다. 조약문에 기명 날인한 후 3개월 이상의 시간을 두고 비준 절차를 거치는 관행을 따를 경우, 한국민의 거센 저항으로 비준이 이루어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사실은 비준 대신 조약을 공포하고 '병합'을 알린 8월 29일자 순종의 칙유문 전권위원 위임의 칙서에 사용된 도장은 대한국새가 아니라 행정 결재에만 사용되는 칙명지보 어새가 찍혀 있을 뿐이며, 모든 법령에 들어가는 황제의 친필 서명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그토록 합의와 합법을 가창해 조약의 형식을 갖추려고 애썼지만, 결과적으로 비준서에 해당하는 '병합'공포 칙유문에 조약상 필수요건에 결격사유가 생기고 말았다. 한마디로, '한일병합조약'은 불법이나 합법을 따지기 전에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셈이다. 이 점은 비록 때늦은 감이 있지만 1926년 4월 순종이 붕어 직전에 남긴 유조에서 "지난날의 병합 인준은 강인이 역신의 무리와 더불어 제멋대로 선포한 것이요, 다 나의 한 바가 아니라"고 밝힌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현재 한일 양국 간에 '병합조약'의 불법·합법 혹은 부당·합당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학문의 연구차원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과 배상 그리고 오늘날 일본의 역사인식을 정확히 가능하는 현실의 문제이다. 오늘날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침략행위를 정확히 인식하기는커녕 합리화하고 미화하거나 독립운동의 참뜻마저 왜곡하는 풍조가 남아 있다.

(*국가보훈처 간행 '경술국치 100년 계기 교육 자료'참조)

본회는 이날을 상기하는 행사로 지난 2010년 경술국치 100년 행사에 이어, 2011년 본회 행사를 시작으로 2012년 본회 및 전국의 시도지부 지회로 확대, 당일(8월 29일)에 조기를 게양하고 검은 넥타이를 매고 더운 음식을 피하여 찬 죽을 먹으면서 국치일 상기 행사를 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 공공기관과 관공서는 물론, 전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